

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 30일	
청구인	상 호 (법인명)		법인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	
	성 명 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		
	주 소 (사업장)				
	전화번호 (휴대전화)		전자우편주소		
세무조사 결과 (과세예고)	통지관서				
	통지연월일 (통지받은날)				
청구세액 내용	세목		통지세액		
	과세기간		청구세액		
청구내용 및 이유					
첨부 서류					

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지방국세청장·세무서장 귀하

「국세기본법」 제59조제1항 및 제81조의15제6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합니다. (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취하는 이에 대한 별도의 위임이 있어야만 합니다)						
위 임 장	위임자 (청구인)		(서명 또는 인)			
	대 리 인	사 업 장	상호	사업자등록번호	소재지	전자우편
			(서명 또는 인)			
	수 행 자	구 분	성명	생년월일	(휴대)전화번호	
			세 무 사 [] 공인회계사 [] 변 호 사 [] 배 우 자 등 []			

국선대리인 제도 안내

□ 제도개요

- 신청자격을 갖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,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,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,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은 재결청이 위촉하는 변호사,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자격

- 대리인 없이 신청·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,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,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납세자는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다만, 과세전적부심사,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목이 상속세,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□ 신청절차

-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「국세기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재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.

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		(접수번호 호)	
청구인		주 소	
첨부서류 1. 불복이유서() 2. 불복이유에 대한 증거서류()		접수자	
		접수일자인	
납세자는 세무관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(www.hometax.go.kr → 전자불복청구)를 이용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고,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, 사전열람자료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			